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정국장 김정수)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안 제1조)
-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안 제5조)
-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격 및 제한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질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 실태 파악,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등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명령 등 이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비록 본 조례 제명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더라도 본 조례 제정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근로자”라는 용어를 정의·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위해서는 상위법 규정과의 체계 일관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 “센터”라 한다)”를 삭제한다.
- 안 제2조제2항 중 “버드나루로 23길 24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내에”를 “관내에”로 한다.
- 안 제3조제1호 중 “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 안 제3조제2호를 제3조제3호로 하고,

제3조제2호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110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19. 6. 19.

제안자: 허홍석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 “센터”라 한다)”를 삭제한다.
- 안 제2조제2항 중 “버드나루로 23길 24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내에”를 “관내에”로 한다.
- 안 제3조제1호 중 “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 안 제3조제2호를 제3조제3호로 하고,
제3조제2호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 “센터”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버드나루로 23길 24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내에”를 “관내에”로 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2호를 제3조제3호로 하고, 제3조제2호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영등포구 <u>버드나루로 23길 24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내에 둔다.</u>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 ② 위치는 영등포구 <u>관내에 둔다.</u>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센터</u>”란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u>〈신 설〉</u> 2. (생략)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_____ 한다)</u>”란 ----- ----- --- ----- --- -----. 2. “<u>노동자</u>”란 <u>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u> 3. (원안 제2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

② 위치는 영등포구 관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3.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4.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퇴소 명령 등을 통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4.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센터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0 호
----------	---------

제출연월일: 2019.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안 제1조)
- 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안 제5조)
- 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격 및 제한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2019. 5. 9. ~ 5. 24. / 16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3길 24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취약계층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3.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4.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퇴소 명령 등을 통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4.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센터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